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8일, 김의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의겸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안은 「검찰청법」의 폐지 및 「공소청법」의 제정을 고려하여 관련된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직무를 의미하는 ‘검찰’을 ‘검사 직무’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입법 취지 및 입법 타당성이 인정됨.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위원)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1항 중 “檢察”을 “검사직무”로 한다.

제125조 중 “검찰”을 “검사직무”로 한다.

제126조 중 “검찰”을 “검사직무”로 한다.

제128조 중 “檢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裁判, 檢察, 警察 其他 人身拘束에 關한 職務를 行하는 者 또는 이를 補助하는 者가 그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과 10年 以下の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 (생 략)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檢査,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職務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檢査,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職務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	第124條(不法逮捕, 不法監禁) ① —— <u>검사직무</u> —— _____ _____ _____ _____ -----.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 <u>검사직무</u> —— _____ _____ _____ _____ -----. 제126조(피의사실공표) <u>검사직무</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第128條(選舉妨害) 檢察, 警察 또는 軍의 職에 있는 公務員이 法令에 依한 選舉에 關하여 選舉人, 立候補者 또는 立候補者 되려는 者에게 脅迫을 加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選舉의 自由를 妨害한 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과 5年 以上の 資格停止에 處한다.	_____ -----. 第128條(選舉妨害)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u>_____ _____ _____ _____ -----.
---	--